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7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발 의 자: 김영옥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서상열, 오금란, 유만희,
유정희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
이종환, 이희원, 임춘대,
최민규, 홍국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내 노후화된 지상철도 구간은 구조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, 이에 지하철 1, 2호선 등 도시기반 교통시설 지하화 등의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용도를 지상 또는 지하철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 사업으로 확대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도로·철도(지상 또는 지하), 수도,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	<p>제6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도로 · 철도(지상 또는 지하), 수도,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</u></p> <p>3. ·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(기금의 용도) 제2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의 노후화된 주요 기반시설(도로·철도, 수도, 하수도 등)을 재설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